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1
----------	------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발 의 자 : 이병도, 김용석, 채유미, 김경우,
추승우, 김화숙, 오현정, 이동현,
김제리, 권영희, 홍성룡, 양민규,
박순규, 전병주, 이정인, 한기영,
최웅식, 권수정, 임종국, 성흠제,
김인호 의원(21명)

1. 제안이유

- 4·16세월호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사건이었음.

이에 4·16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그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사회 구축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다. 안전사회를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희생자의”를 “희생자”로, “생명·안전 및 인권·정의에 대한 의식의 고취를”을 “인간존엄과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의식을 증진하는 것을”로 한다.

제3조 중 “인간존엄”을 “인간존엄과 안전사회”로, “의식함양을 위하여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추모가”를 “의식 함양을 위하여 희생자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이”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희생자 추모계획 수립)”을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 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추모를 위하여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계획(이하 “추모계획”이라 한다)”를 “추모와 안전사

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 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모계획”을 “제1항에 따른 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추모시책”을 각각 “시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추모를”을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추모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으로, “노력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추모사업)”을“(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희생자 추모 행사
2.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 조성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추모사업”을 “제5조에 따른 사업”으로, “추모사업”을 “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세월호 참사로 인한 <u>희생자의 추모</u>를 통하여 <u>생명·안전 및 인권·정의에 대한 의식의 고취</u>를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인간존엄에 대한 시민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추모</u>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p> <p>제4조(<u>희생자 추모계획 수립</u>) ① 시장은 <u>희생자 추모를 위하여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계획</u>(이하 “추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p> <p>② <u>추모계획</u>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p>1. <u>추모시책</u>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u>희생자</u> ----- <u>인간존엄과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 의식을 증진하는 것을</u> -----.</p> <p>제3조(책무) ----- ----- <u>인간존엄과 안전사회</u>--- <u>의식 함양을 위하여 희생자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u>이 ----- -----.</p> <p>제4조(<u>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 계획 수립</u>) ① ----- ----- <u>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 계획</u>-----.</p> <p>② <u>제1항에 따른 계획</u>----- -----.</p> <p>1. <u>시책</u>-----</p>

향

- 2. 추모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
- 3. 추모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방안
- 4. (생략)
- 5. 그 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추모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피해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추모사업) ① 시장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추모사업의 원활한 추진

--

- 2. 시책-----
- 3. 시책-----

- 4. (현행과 같음)
- 5. -----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을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

-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사업)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희생자 추모 행사
- 2.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 조성
-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 4. 그 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탁) ① ----- 제5조에 따른 사업-----

을 위하여 추모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
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 사업-----

-----.

② (현행과 같음)